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연월일	2022. . . (제 회)	

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○○○ (보건복지부장관)
제출연월일	2022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법 제59조의2제1항에 따른 검사 등을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하거나, 보고 또는 관계 서류 제출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이 개정(법률 제18621호, 2021. 12. 21., 공포)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가. 과태료의 부과기준 추가(안 별표2)

법 제59조의2제1항에 따른 검사 등을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하거나, 보고 또는 관계 서류 제출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법 제62조제5항제7호가 신설됨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기준에도 이를 추가함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 진행 예정

3) 규제심사 전

대통령령 제 호

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2 제2호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하. 법 제59조의2제1항에 따른 검사 등을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하거나, 보고 또는 관계 서류 제출을 하지 않은 경우	법 제62조제1항제6호	150	200	300
---	--------------	-----	-----	-----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	
연락처	(044) 202 - 2558